

제주지방법원 2017. 5. 23 선고 2017가단574 판결 [건물철거및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1. A

2. B

피고C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7. 5. 2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귀포시 D 대 536㎡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, 4, 3, 2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가) 부분 철파이프조 단층 비닐하우스(창고) 68.4㎡ 및 같은 도면 표시 5, 8, 7, 6,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나) 부분 철파이프조 단층 비닐하우스(창고) 34.2㎡를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김기춘

별지